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08.

특 허 청
(산업재산등록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되는 부분디자인 항목에 대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발명의 실시 유형으로 추가된 ‘수출’을 기재요령 예시로 추가하고, 국제디자인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등록번호로 규정된 부분을 ‘국제’등록번호로 정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월중 예정)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제디자인등록원부

국 제 등 록 번 호	제 호
-------------	-----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출 원 번 호	
	국 제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국제공개 연월일	년 월 일
	우선권	주장일자	년 월 일	주 장 수	
		주장국			
	원 출 원 연 월 일		년 월 일	원 출 원 번 호	
	등 록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년 월 일	등 록 의 구 분	
	디 자 인 의 수		기본디자인 건, 관련디자인 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련번호 물품류 물 품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 등록번호란]

--

[디 자 인 권 자 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	---------

--	--

[전 용 실 시 권 자 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통 상 실 시 권 자 란]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국 제 등 록 사 항 기 재 란]

기재번호	등 록 사 항

비고 : 등록사항 중 국제등록 연월일과 국제공개 연월일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
는 날 이후 국제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뒤쪽 9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96조의2제1항”으로,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9 중 “대여”를 “대여”, “수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디자인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사. (생략)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연 락 처	(042) 481 - 5233